제100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기준(신설) ㅇ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규정 - 구체적인 기준(시설, 장비, 인력 등)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	비중요
		2.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(신설) ㅇ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규정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	비중요
2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(신설) ㅇ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(교육과목, 인력, 시설 및 장비)을 설정하여,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, 별표 10	비중요
		2.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결과 공개(신설) ㅇ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(신설) ㅇ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받은 대학에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여부 등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4	비중요
		4.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(신설) ㅇ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입학한 학생과 교육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졸업 또는 수료시까지 이론 및 실습 과정을 계속 제공하도록 함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5	비중요
3	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 D급(금속화재용) 소화기의 나트륨, 칼륨에 대한 소화성능시험 기준 규정(신설) ㅇ 소화성능시험에 필요한 시료중량, 시험조건, 시험방법, 판정기준 신설(안 제4조 관련 별표7) ▶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·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소화활동설비)의 설치대상 확대(강화) ㅇ 경보설비(안 제11조 관련 별표4) - 단독경보형감지기 : 지하 차고·주차장 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(해당부분) - 비상경보설비 : 지하 차고·주차장 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(모든 층) - 자동화재탐지설비 : 지하 차고·주차장 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(모든 층) - 시각경보기 : 리튬1차 전지공장 - 가스누설경보기 : 공장 ㅇ 소화활동설비(안 제11조 관련 별표4) - 연결살수설비 : 지하 차고·주차장 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(해당부분), 주차면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	비중요
5	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명단공표 제외기준 지원고용 및 맞춤훈련의 채용전제 기한 설정(신설) ㅇ 명단공표 제외기준 지원고용 및 맞춤훈련의 채용전제 기한 설정 ▶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8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고용개선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규정(신설) ㅇ 명단공표 사업체 중 '3년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을 0명 고용한 사업체'는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공표 ▶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1조	비중요
6	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(강화) <중요정보 표시·광고 대상 체육시설업종에 요가·필라테스 추가> ㅇ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에 대하여 요금체계(기본요금 및 추가비용) 및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, 광고시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함 <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 의무화> ㅇ 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의 경우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(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)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표시 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추가하여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함 ※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아님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<결혼서비스업종 요금 및 환불기준 표시 의무화> ○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하여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*의 항목별 요금 및 환불기준과 같은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** 중 한 곳,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함 *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**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종합포털사이트(www.price.go.kr)이며,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메뉴를 별도 구축 예정 ▶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▶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제Ⅴ. 업종별 중요정보.	
7	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보험회사등의 준수사항(신설) ○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(기존)와 유지관리 수수료(신설)로 구분 ○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모두 설계사 모집 비용 목적으로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한도내로 집행 ○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을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·공시 ▶보험업감독규정 제4-32, 제7-46	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(신설) ㅇ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 대한 1년간 지급되는 시책, 정착지원금 등 수수료를 1년간 납입된 보험료 총액 이내로 제한 ㅇ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구분 등 신설 수수료 체계 적용 ▶보험업감독규정 제4-32	중요
		3.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설치·운영(강화) ㅇ 보험회사에 보험상품 기초서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보험상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무 부과 ▶보험업감독규정 제7-72의1, 제7-72의2	비중요
		4.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(강화) ㅇ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·설명하고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, 추천 사유 및 모집수수료 수준 등을 설명 ▶보험업감독규정 제4-11	비중요
8	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(강화) ㅇ 항만하역업체가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에 악천후 관련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 ▶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 신약의 광안정성시험 조건(신설) ㅇ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지침의 제3조 2항의 1에서 "가혹시험의 기준 중 시험조건으로 광선, 온도,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 광선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었음 -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신약의 광안정성 시험 기준을 신설하고, 신약으로서 광안정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시험하도록 함 ▶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3조	비중요
10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(강화)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 기간 연장(1년→3년) ▶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	비중요
11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조치, 보수·보강조치 대상 규정(신설) ㅇ (제2종·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) 제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, E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,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제2종·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C, D, E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 정밀안전진단 실시 * 건축물은 제외함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대상 확대) 안전등급이 D,E등급인 시설물에 대해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의무 부여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,제18조의2	
		2. 보수·보강 조치 기한 강화(강화) ○ (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단축) 시설물의 보수·보강 의무이행 기한을 최대5년에서 3년(보수·보강 계획 1년 + 보수·보강 이행 조치 2년)으로 단축 * 단,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완료 기한 연장 가능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	비중요
		3. 보고 대상 사고 범위 확대(강화) ○ (보고대상 사고 범위 확대) 관리주체의 보고 의무가 있는 시설물 사고 범위가 확대 * 사망·실종자 : 3명 이상 →1명 이상, 부상자 5명 이상 신설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범위 확대(강화) ㅇ (시설물사조위 협력 의무)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 범위 확대로 관리주체의 현장 보존·출입 및 자료 제출 등 협력 의무 증가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	비중요
12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조합임원등의 운영·윤리교육(신설) ㅇ 조합임원등에 대한 운영・윤리교육의 세부사항 규정 - 조합임원등은 그 직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·윤리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,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, 지자체가 실시하는 운영・윤리교육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0조	비중요
13	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의무가 적용되는 용도 및 규모(신설) ㅇ 「건축법」에 따른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 중 PF 수요가 높은 건축물 및 택지개발, 주택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보고대상으로 규정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사항 및 특수목적법인 종류(신설) ㅇ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보고의무자인 특수목적법인 종류를 규정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	비중요
		3. 부동산개발사업 취소기준(신설) ㅇ 부동산개발사업의 중단, 취소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	비중요
		4. 추진현황 보고 주기(신설) ㅇ 본 법의 관리 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	비중요
		5. 평가기관의 지정·취소기준(신설) ㅇ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 조정결과의 이행 보고 의무(신설) ㅇ 조정이 성립된 사업의 시행자는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	비중요
		7. 위탁기관의 지정기준(신설) ㅇ 사업계획·추진현황 보고의 접수,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, 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▶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	비중요